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수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년 05월 31일
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2010년 5월 2일자로 최초 효력발생하고 2012년 4월 12일에 연간 갱신을 한 본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중 갱신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간 갱신된 간이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06월 0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 (전화: 02-2003-9000(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 예정 기간
3. 모집 예정 금액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명칭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6720)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w	종류 I	종류 F	종류 N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6721	A9964	26722	26723	A6081	26724	26725	26726

2. 모집 예정 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 60,000,000,000,000좌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전환형(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채권-재간접형)	-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월로 분배하는 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며, 또한 월 분배금은 전혀 확정된 수익이 아님.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나.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에게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1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피델리티 펀드-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 (Fidelity Fund - Emerging Market Debt Fund) (“피투자집합투자기구”)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1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3)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실물자산·통화나 채권·실물자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장내파생상품”)
4) 장외파생상품		상기 제3)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5) 금전차입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금전의 차입”).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7)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미달리어머징채권펀드 (Fidelity Funds Emerging Market Debt Fund) - 종류: A-ACC-USD Class
펀드설립일	- 2006년 1월 23일
펀드 규모	- 미화 579백만달러 (2012년 2월 29일 현재)
운용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hn Carlson - Luis-Filipe Martins
운용회사	- FIL Fund Management Limited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 이머징마켓 발행인들의 현지시장 채무증권, 채권, 주식, 회사채 및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러시아 포함) 및 중동 지역에 주로 투자하나, 위 지역들에 한정되지 아니함
주요투자위험	-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 증권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Fidelity Funds-Emerging Market Debt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미국은행그룹인 JP Morgan이 작성하여 발표한 글로벌 신흥시장 내 거래되는 대외 채권 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지수에 대해 한국원화로 헤지한 지수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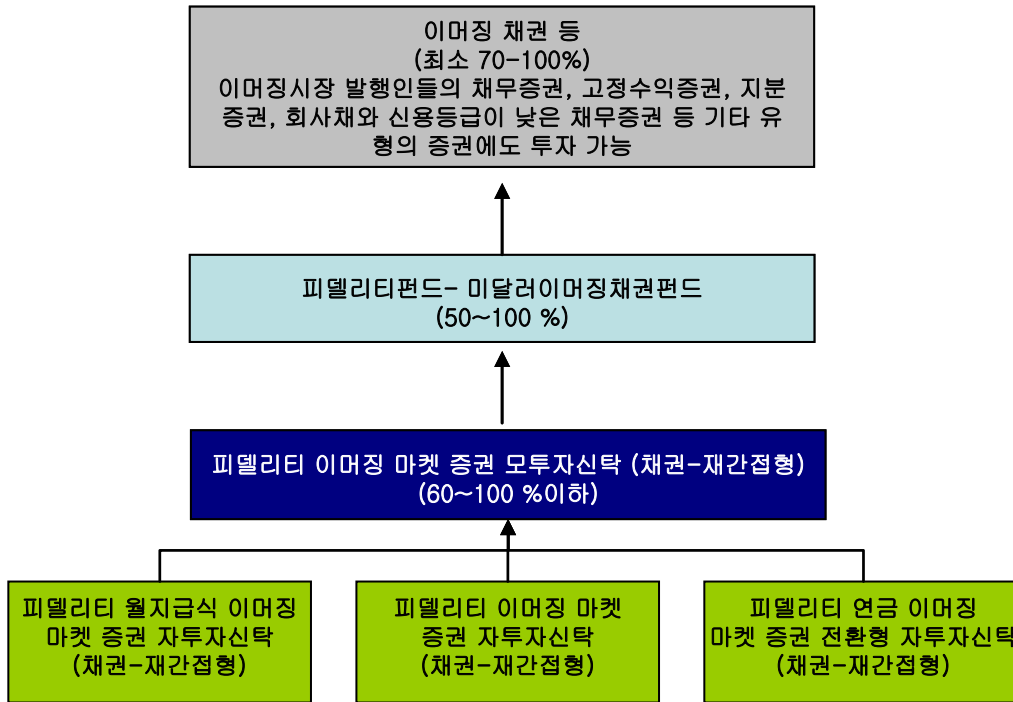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전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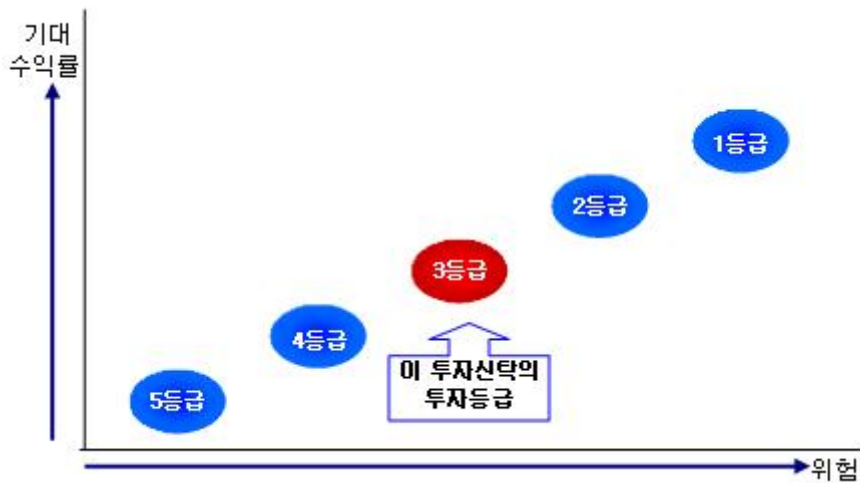
“2012년에 이머징 마켓은 미국과 일본의 성장둔화와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각 국가 통화가치의 방어가 필요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이자율이 계속 하락할 전망입니다. 둔화된 성장률은 2011년 3분기에 최고조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의 디폴트위험이 현재의 낮은 수준보다는 높아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업 섹터는 재무상황이 양호합니다. 지난 10년간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머징 마켓의 국가부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상황이 전체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나 이자소득 상품(income product)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머징 마켓 채권은 장기간 그 성과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전략은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머징마켓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머징마켓 채권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이지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년 3월 31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1971	투자서비스담당 상무	13 개	13,072 억원	<p>[주요 경력]</p> <p>주식운용 및 리서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 <p>보험사 자산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화재 (2년) <p>[학력 및 기타 이력]</p> <p>국제재무분석사(CFA)</p> <p>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p> <p>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p>

※ 상기 운용현황은 모두자산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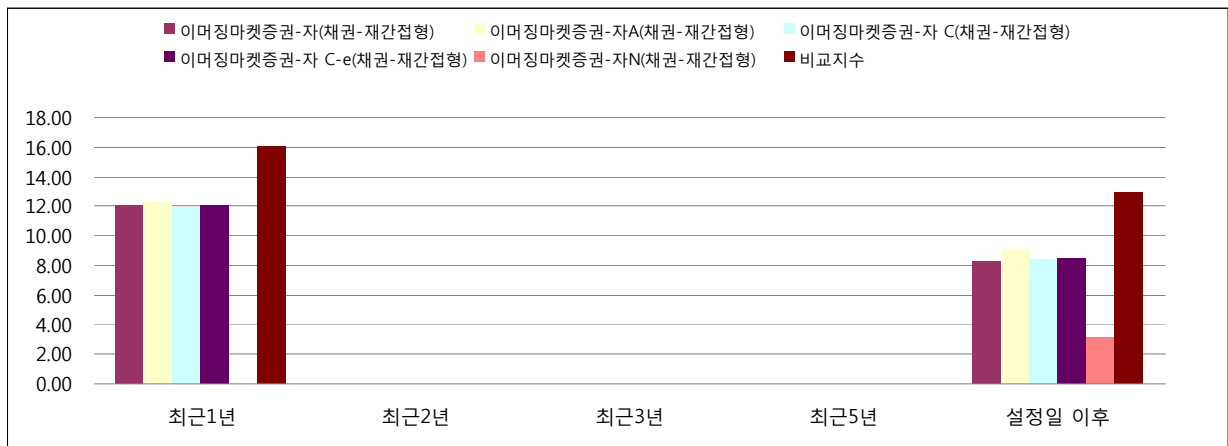
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 2011.03.01 ~ 2012.02.29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0.05.06 ~ 2012.02.29
이머징마켓증권-자(채권-재간접형)	11.99				8.33
이머징마켓증권-자A(채권-재간접형)	12.30				9.11
이머징마켓증권-자 C(채권-재간접형)	11.92				8.36
이머징마켓증권-자 C-e(채권-재간접형)	12.08				8.53
이머징마켓증권-자N(채권-재간접형)	0.00				3.16
비교지수	16.06				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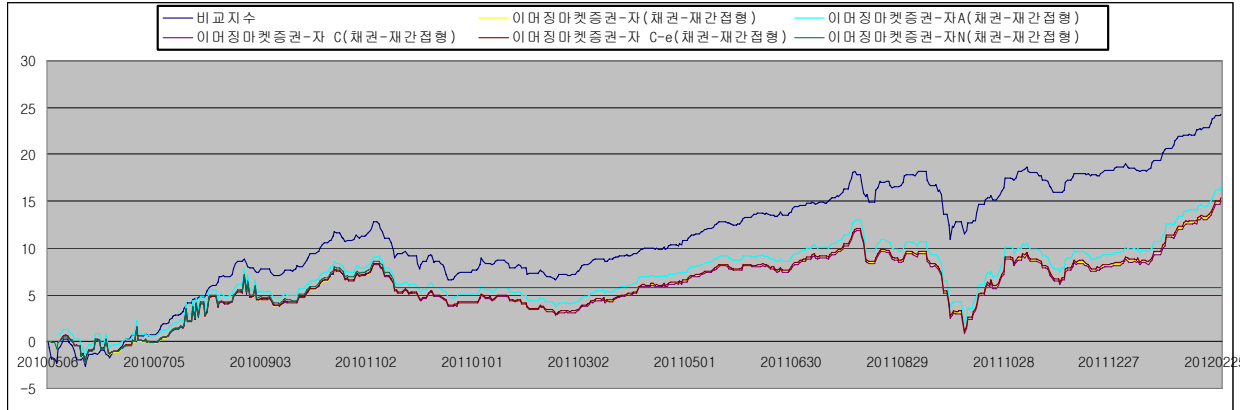
- 1) 비교지수=JP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하였음,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최근1년차 2011.03.01 ~ 2012.02.29	최근2년차 2010.05.06 ~ 2011.02.28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이머징마켓증권-자(채권-재간접형)	11.96	4.03			

이머징마켓증권-자A(채권-재간접형)	12.26	5.29		
이머징마켓증권-자 C(채권-재간접형)	11.88	4.09		
이머징마켓증권-자 C-e(채권-재간접형)	12.04	4.28		
이머징마켓증권-자N(채권-재간접형)	0.00	7.11		
비교지수	16.02	9.21		



- 1) 비교지수=JP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대상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환산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¹⁾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²⁾		전환 수수료
				2012년 8월 31일 까지 환매청구시	2012년9월 3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0.7%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
종류 A-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5%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

종류 C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I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F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N	모투자신탁의 초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해외 계열사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피델리티 웰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¹⁾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²⁾		전환 수수료
				2012년 8월 31일 까지 환매청구시	2012년 9월 3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0.7%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
종류 C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I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종류 F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
------	-------------	---	---	---	---

주1) 선취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 C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2012년 2월말 기준)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종류A	0.1000	0.6500	0.0400	0.0250	0.0000	0.8150	1.4789	0.0000
종류 A-e	0.1000	0.5000	0.0400	0.0250	0.0000	0.6650	1.3150	0.0000
종류C	0.1000	1.0000	0.0400	0.0250	0.0000	1.1650	1.8289	0.0000
종류C-e	0.1000	0.8500	0.0400	0.0250	0.0000	1.0150	1.6797	0.0000
종류C-w	0.1000	0.0000	0.0400	0.0250	0.0000	0.1650	0.8150	0.0000
종류I	0.1000	0.3000	0.0400	0.0250	0.0000	0.4650	1.1150	0.0000
종류F	0.1000	0.0500	0.0400	0.0250	0.0000	0.2150	0.8650	0.0000
종류N	0.1000	0.0000	0.0400	0.0250	0.0000	0.1650	0.81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65%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발생하는 비용]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1년 12월말 기준)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종류A	0.1000	0.6500	0.0400	0.0280	0.0000	0.8180	1.4958	0.0000
종류C	0.1000	1.0000	0.0400	0.0280	0.0000	1.1680	1.8452	0.0000
종류C-e	0.1000	0.8500	0.0400	0.0280	0.0000	1.0180	1.7043	0.0000
종류C-w	0.1000	0.0000	0.0400	0.0280	0.0000	0.1680	0.8436	0.0000
종류I	0.1000	0.3000	0.0400	0.0280	0.0000	0.4680	1.1180	0.0000
종류F	0.1000	0.0500	0.0400	0.0280	0.0000	0.2180	0.8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약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65%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1년 7월 기준)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종류C	0.1000	0.6000	0.0400	0.0250	0.0200	0.7850	1.4350	0.0000
종류C-e	0.1000	0.5000	0.0400	0.0250	0.0200	0.1850	1.33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약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두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연 0.65%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459	331,000	527,842	1,112,798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0,027	544,008	901,197	1,962,659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566	263,536	424,469	902,714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3,851	472,499	790,734	1,736,438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397	376,398	659,743	1,501,760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7,438	590,897	1,035,711	2,357,57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024	327,935	574,797	1,308,40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2,147	542,692	951,219	2,165,242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10	53,310	93,440	212,696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527	263,317	461,537	1,050,588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656	150,236	263,331	599,415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4,272	360,244	631,428	1,437,307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35	69,464	121,755	277,149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651	279,472	489,852	1,115,041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10	53,310	93,440	212,696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527	263,317	461,537	1,050,588

주 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 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모두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및 종류 A-e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과세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3)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12년 4월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9시~오후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 지급 ¹⁾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9영업일(D+8) 에 환매대금 지급 ¹⁾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1)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수령한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까지,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제 11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

(가)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①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전환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10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까지 환매합니다.

(나) 전환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매수합니다. 다만, 위 (가)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합니다한다.

(3) 전환관련 유의사항

- (가)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나)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환시 “III. 1. 수수료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8월 31일까지 환매 청구하는 경우로서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III. 1. 수수료 및 보수”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라)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위 11. 나. (4)의 환매관련 유의사항은 전환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2 기(반기)	제 1 기	
	20111105	20110505	
I.운용자산	77,425,411,621	162,322,300,893	

증권	76,650,406,568	160,682,573,998	
현금 및 예치금	775,005,053	1,639,726,895	
II. 기타자산	3,464,075,784	8,177,565,003	
자산총계	80,889,487,405	170,499,865,896	
II. 기타부채	3,486,005,874	6,696,288,663	
부채총계	3,486,005,874	6,696,288,663	
I. 원본	76,067,469,599	152,926,848,222	
II. 수익조정금	-1,042,476,412	9,675,270,098	
III. 이익잉여금	2,378,488,344	1,201,458,913	
자본총계	77,403,481,531	163,803,577,233	
I. 운용수익	3,001,667,498	3,565,879,333	
이자수익	15,809,121	45,789,387	
매매/평가차익(손)	2,985,784,104	3,449,162,460	
기타이익	74,273	70,927,486	
II. 운용비용	623,179,154	2,364,420,420	
관련회사보수	620,201,548	2,347,629,400	
기타비용	2,977,606	16,791,020	
III. 당기 순이익	2,378,488,344	1,201,458,913	
* 매매회전율	0	0	
* 매매수수료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함.